

工業所有權法의 改正課題

徐 大 錫

<辨理士>

① 特許制度의 要請

特許法은 1946年 10月 5日 美軍政法令으로 制定된 以來, 大體로 本質的인 變化가 없이 現在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그러나 2次大戰 後에 있어서의 技術의 飛躍的 發展과 技術隔差의 擴大는 특히 우리나라의 6.25戰亂으로 因한 荒廢한 產業構造에 더욱 크게 影響을 미치게 함과 同時에 技術發展을 促進할 特許制度에 어여한 變更을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특허제도의 보다 合理的인 運用은 그 나라의 기술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하기 때문에 法制度 自體를 기술발전의 段階에 適應되게끔 이것을合理的으로 調整하기 위하여 变경하는 것은 國家로서는 必要不可缺의 事項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본다면 오늘날까지 특허제도의 变경이 우리나라 產業의 飛躍的 發展을 遂行할 時期에 어떻게 對應하였는가 하는 것이 分明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改正하고자 하는 點에 있어서는 現在의 特허제도가 어여한 特色을 가지고 있으나는 점과 앞으로 어여한 技術進步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技術構造의 變化에 對應시켜서 考察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現段階의 기술발전을 보다 합리적으로 規制하기 위해서는 特허제도에 期待되는 다음 3가지의 基本的인 問題로 要約된다.

첫째, 오늘날에 있어서의 기술의 急速한 발전 —— 그것은 아직껏 없었던 急激한 程度이다 ——

라고 把握한다면 더한층 促進하기 위하여 특히高度의 기술을 重點的으로 保護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낮은 水準에 있는 기술을 보호한다는 것은 기술의 진보를 沈滯시켜 制度本來의 目的을 充分히 遂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常識이다.

둘째, 위에서와 같은 原則的인 要請과 우리나라의 特殊한 기술구조에서 오는 요청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特別한 配慮가 필요하게 된다.

즉 現在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의 跛行性과 이를 立證할 수 있는 수많은 中小企業의 廣汎한 存在와 그 活路에 대하여 實用新案法은 市場規制의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高度의 기술을 보다 厚大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낮은 기술을前者와는 別途로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要請은 고도의 기술만을 보호하는 傾向이 強하면 강할 수록 보다 더 강하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향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기술수준의 跛行性을 더욱 助長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特許法에 의한 保護對象과 實用新案法에 의한 보호대상을 法的으로 嚴密히 区別하고 있는 法律로서의 體系를 갖추어야 하고, 기술의 跛行性의 調整을 위해서는 그 設定權의 합리적인 보호제도를 擇하여야 할것이다.

셋째, 기술의 진보가 보다 急速하게 됨에 따라 고도의 기술은孤立, 分散的으로 存在할 수 없으며, 個個의 기술은 一定한 技術體系中에 組入되어 複雜한 構成을 가지게 된다.

그럼으로 法概念으로서의 發明이 어떻게 把握

되어야 하는 問題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發明概念을 어떻게 또 어떠한範圍에서 파악하는가 하는 것은 먼저 보호대상인 개개의 기술내용 및 범위를 規定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從來 우리나라에서는 國內技術水準의 낮음을反映하여 법적으로 발명을 고립·분산적인 것으로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보호대상의 執着은 기술을 체계적으로理解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로 分離시켜 놓는 것이어서 그 保護方法自體가 매우不合理하게될 憂慮가 있다.

그러므로 기술발전에 따라 보다增大되는 것은 기술의 體系化, 複雜化를確實하게 法概念을再構成한다는 것이切實히 필요하다.

以上과 같이 現段階에 있어서의 특허제도는 기술진보와 우리나라의 그特殊性에根據한 要請을 載여지고 있으므로 改正法은 이러한 特質을 살려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번 개정은 뒤에서와 같은 요청에充分히 應하고자努力한 것으로傳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1946년에 제정된 이래 많은 개정을 보아 왔으나 實際에 있어서는舊制度의 내용을本質적으로 变경하지는 않고徹底하게舊法 그것과의妥協이 이루워진 점에特質이 있다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根本的인變革을 위한 이번 개정에 면적진課題는 化學物質特許의 與否와 全面的 多項制 또는 早期公開制의 採用등에 있다고 보는側이 많은 것 같다.

이와같이 보는 측의 요청——그것들은 기술발전의必然的結果——에對應하여 요청되는 것이긴 하나——어느정도로 변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변혁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이번의 改正自體는 無意味한 것으로이 될 것이다.

② 特許制度의 運用

工業所有權法은 개정을 거듭하게 됨에 따라 다음 두가지의 性格이 보다分明하게 나타나는 것이常例이다.

첫째는 經濟社會에 있어서의 競爭·獨占이라는現象의 出現에 매우 강한 影響을 받게되므로 이 影響力を無視하고서는 法의 성격을論할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單純한行政法規를超越하여準司法規의 성격이強化되어司法的인構성에 의한體系化가分明하게浮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들수 있다 하겠다.

공업소유권법은 이와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히 그解釋은 단순한論理操作만으로는未澈하여, 한편으로는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경쟁이나 독점에 대한規制面에서現在如何한 역할과機能을 하고 있는가라는현실적인制約을받지 않을수 없다.

反對로流動的인經濟動向의現象에直接의인영향을받지않는節次法이지닌論理性은貫徹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法의解釋을둘러싼두가지의面을 어떻게調和시키느냐하는것은많은研究에期待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現實에 있어서 어떤 한 수준에 있는 발명이특허의 대상으로 되는가, 용이하게思考되는발명과 그렇지 않은 발명과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발명이同一하다는客觀的標準을 어디에들것인가, 발명과 실용신안의思想의產物을具體적으로 어떻게 구별할것인가, 商標가類似하다고할수있는것은현실의商品流通過程에의하여制約을받을것인가라는많은점에서技術社會, 經濟社會에 있어서의기술이나경제의發展段階를認識하지않고서는어느하나解석할수없는문제가생기게되는것이다.

특히 이러한 것과直接의인關聯性을 가지지않는節次面에서는民事訴訟法을典據로하는準司法의체계화가이루어져야하며, 또그와같은논리성의實現이이루어지는한편, 이準司法의體系와이에隨伴되는司法의體系——簡單하게審判과訴訟間의體系의in統一을여하하할것인가가曖昧하기때문에 절차의논리성을어느정도까지非妥協의으로聯關係시키느냐하는解釋上 많은問題點이潛伏하고있다.

이상과같은문제점의妥當性 있는 해결은공업소유권법의運用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운용의직접적인擔當은特許廳의審查,審判官이며, 특허제도에 한거름다가선辨理士라 할것이다.

이와같이본다면, 이次第에審查,審判官의資格을法制化하여야 할것도잊어서는안될것이다. ♣